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53,165,022	40,594,951
일반회계	1,158,240,317	34,747,210
특별회계	194,924,705	5,847,741
공기업특별회계	107,061,989	3,211,8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352,390	1,330,5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324,628	1,539,73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384,971	341,549
기타특별회계	87,862,716	2,635,881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366,586	70,998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841,604	85,248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08,105	123,243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61,316	94,839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	69,000,000	2,070,000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6,385,105	191,553

제 2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845,20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9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